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정준호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현행 조례에 따라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저수조 등 급수설비의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시장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소독등 위생조치 이행 여부를 지도·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, 설치 신고 의무는 부여하지 않아 저수조의 원활한 위생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.

□ 이에 본 조례는 최근 상위법(「수도법」 제33조제2항) 개정에 맞춰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의 설치 및 보유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신고하는 의무와 위반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저수조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.

-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시장에
게 신고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(안 제40조의2제1항).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
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